

[본조신설 2022. 4. 13.]

- 제6조(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)**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)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1. 12. 13., 2018. 7. 3., 2022. 4. 13.>
1.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
 2.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
 3. 화물자동차의 전복(顛覆) 또는 추락. 다만,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.
-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)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8. 7. 3., 2022. 4. 13.>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- 제7조(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)** 법 제21조제1항(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)라), 같은 호나목2)바) 및 같은 호 다목4)타)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1. 27., 2020. 6. 16., 2022. 4. 13., 2024. 7. 9.>

[전문개정 2018. 7. 3.]

- 제8조(과징금의 납부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(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3. 12. 12.>
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.
-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- 제8조의2(과징금의 용도)**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"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3. 6. 11., 2016. 6. 21.>

1.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· 운영사업
2.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가 설치 ·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
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(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[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라 한다)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]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[제9조에서 이동 <2011. 12. 13.>]

- 제9조(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)**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)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12. 13., 2013. 3. 23., 2016. 6. 21., 2018. 7. 3., 2022. 4. 13., 2024. 7. 9.>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7. 3.>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[제9조의2에서 이동 <2022. 4. 13.>]